

2021. 1.16. 경찰승진시험

경찰실무종합

자료제공 : 김재규 교수

www.ollaedu.com

1 경찰의 개념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핵심정리 12p]

- ①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사회공공의 안녕, 질서유지와 같은 소극적 목적을 위한 작용이다.
- ②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특별통치권에 근거하여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 권력적 작용으로 독일의 행정법학에서 정립된 학문상 개념이다.
- ③ 형식적 의미의 경찰작용은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에 분배된 사무를 말하며, 이에 따른 경찰활동의 범위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④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언제나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되는 것은 아니고, 또한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모두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되는 것도 아니다.

해설 → ①③④ 모두 옳은 설명이다.

- ② (X)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일반통치권에 근거하여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 권력적 작용으로 독일의 행정법학에서 정립된 학문상 개념이다.

[핵심정리]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

구 분	형식적 의미의 경찰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 념	① 실정법상·조직법상 개념 ②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에 분배되어 있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경찰활동 → 국가별로 차이가 나는 유동적 개념 ③ 사법경찰, 정보경찰, 경찰의 서비스 활동	① 이론·학문상(실무상 X) 정립된 개념 - 독일 행정 법학에서 유래 ②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근거하여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 권력적 작용 ③ 위생경찰 등
양자의 관계	① 형식적 의미의 경찰 일부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고, 실질적 의미의 경찰 일부가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할 뿐이지 양자는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포함하는 관계가 아니다. ② 일반행정기관이 실질적 의미의 경찰작용을 하는 경우는 있으나, 형식적 의미의 경찰작용을 하지는 않는다. → 일반행정기관에서도 '경찰기능'을 담당한다고 할 때의 '경찰기능'은 실질적 경찰개념을 의미한다. ③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에 의한 불심검문은 경찰상 즉시강제(불심검문의 성격에 관해 학설의 다툼이 있음)의 권력작용이라는 면에서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하고, 실정법에서 경찰행정기관에 그 권한을 맡기고 있으므로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기도 하다.	

정답 ②

2 한국경찰사에 길이 빛날 경찰의 표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핵심정리 33~35p]

- ① 안택결 총경은 1950년 8월 30일 성산포경찰서장 재직시 계엄군의 예비검속자 총살 명령에 '부당함으로 불이행'한다고 거부하였다.
- ② 이준규 총경은 1957년 국립경찰전문학교 교수로 발령 받아 후배 경찰교육에 힘쓰다 1961년 5·16군사정변이 일어나자 군사정권에 협력할 수 없다며 사표를 제출하였다.
- ③ 문형순 경감은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비례의 원칙에 입각한 경찰권 행사 및 시위대의 인권보호를 강조하였다.
- ④ 백범 김구 선생은 1919년 상하이에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경무국장으로 취임 후 임시정부 경찰을 지휘하며 임시정부의 성공적 정착에 이바지하였다.

- 해설** → ① (X) 지문은 문형순 경감에 대한 설명이다.
 ② (X) 지문은 안택결 총경에 대한 설명이다.
 ③ (X) 지문은 안병하 치안감에 대한 설명이다.
 ④ (O) 옳은 설명이다.

[핵심정리] 한국경찰사에 길이 빛날 경찰의 표상

백범 김구 선생	① (민족의 사표-師表-) 1919년 상하이에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경무국장 ② 경무국장 취임 후 임시정부경찰을 지휘하며 임시정부의 성공적 정착에 이바지함 ③ 1932년에는 직접 대한교민단 의경대장('32.1.11.~'32.2.) 취임하여 일제의 밀정 색출, 친일파 처단 및 상해 교민사회의 질서유지 등 임무 수행 ④ 윤봉길 의사 의거 이후 김구 선생과 임시정부 요인들은 일제의 탄압을 피해 중국 전역을 이동하는 고난의 시기를 겪었으며 1940년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으로 선출됨
안택결 총경	(독립운동가 출신 여성경찰관) ① 도산 안창호 선생의 조카딸로서, 1919년 10월 평양 숭의여학교 재학 중 만세시위에 참여하다 체포되어 20일간 구금 ② 1936년 임시정부 군자금 조달 혐의로 5개월간 구금되었으며, 1937년 일제가 조작한 수양동우회 사건으로 수배된 후 만삭의 몸으로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가석방됨 ③ 1946년 5월 미군정하 제1기 여자경찰간부로 임용되며 국립경찰에 투신하였고 1952년부터 2년간 서울여자경찰서장을 역임하며 풍속·소년·여성보호 업무를 담당, 여자경찰제도는 당시 권위적인 사회 속에서 선진적이고 민주적인 제도였음 ④ 1957년 국립경찰전문학교 교수로 발령 받아 후배 경찰교육에 힘쓰다 1961년 5·16군사정변이 일어나자 군사정권에 협력할 수 없다며 사표를 제출
문형순 경감	(민주·인권경찰의 표상) ① 문형순 서장은 신흥무관학교를 졸업한 독립군 출신으로 광복 이후 경찰간부(경위)로 경력채용되어 경찰에 입직함 ② 제주 4·3사건 당시인 1948년 12월, 제주 대정읍 하모리에서 검거된 좌익총책의 명단에 연루된 100여명의 주민들이 처형위기에 처하자 당시 모슬포서장 문형순은 조남수 목사의 선처 청원을 받아들여 이들에게 자수토록 하고, 1949년 초에 자신의 결정으로 전원을 훈방함 ③ 1950년 8월 30일 성산포경찰서장 재직 시 계엄군의 예비검속자 총살 명령에 '부당함으로 불이행'한다고 거부하고 278명 방면함

안병하 치안감	(민주·인권경찰의 표상) ①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1962년 경찰에 투신, 1979년 2월 전라남도 경찰국장으로 임명 ②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무장 강경진압 방침이 내려오자 안병하 전남경찰국장은 전남경찰들 에게 ‘분산되는 자는 너무 추적하지 말 것, 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등을 지시하고, ‘연 행과정에서 학생의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라’고 지시함 → 비례의 원칙에 입각한 경찰권 행사 및 시위대 인권보호를 강조 ③ 신군부의 명령을 어긴 죄로 직무유기 혐의로 직위해제 당하고 보안사 동빙고 분실로 끌려가 10 여일간 혹독한 고문을 받은 후, 후유증으로 투병하다 사망함
이준규 총경	(민주·인권경찰의 표상) ① 이준규 서장은 1948. 3. 31. 경찰 입직(순경 공채)하였는데, 1980년 5·18 당시 목포경찰서장으 로 재임하면서 안병하 국장의 방침에 따라 경찰 총기 대부분을 군부대 등으로 사전에 이동시켰 으며, 자체 방호를 위해 가지고 있던 소량의 총기마저 격발할 수 없도록 방아쇠 문치를 모두 제 거해 경찰관들과 함께 고하도 섬으로 이동시키는 등 원천적으로 시민들과의 유혈충돌을 피하도 록 조치하여 광주와 달리 목포에서는 사상자가 거의 나오지 않았다.

정답 ④

3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핵심정리 37~40p]

- ① 행정규칙에 따른 종래의 행정관행이 위법한 경우에는 행정청은 자기구속을 당하지 않는다.
- ② 법규명령이란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기관에 의하여 제정된 성문법규를 말하며, 그 종류에
는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이 있다.
- ③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긴급히 시행하
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
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위임명령은 상위법령의 집행 시 필요한 절차나 형식을 정하는 데 그쳐야 하며 새로운 법규사항을 정
하여서는 안된다.

해설 → ①② 모두 옳은 설명이다.

③ (O)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④ (X) 집행명령은 상위법령의 집행 시 필요한 절차나 형식을 정하는 데 그쳐야 하며 새로운 법규사항을 정하여
서는 안된다.

[핵심정리] 위임명령과 집행명령

위임명령	법률의 개별적·구체적 위임에 근거해서 법률의 내용을 보충하고 구체화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 → 위임명령은 법률이나 상위명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한 개별적인 위임이 있을 때 가능함
집행명령	법률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부수적·세목적 규정을 정하는 경우 → 집행명령은 상위법령의 집행 시 필요한 절차나 형식을 정하는데 그쳐야 하며 새로운 법규사항을 정하여서는 안됨

정답 ④

4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국가경찰위원회 규정」상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핵심정리 44~45p]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 임명을 동의할 때,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 3인 이상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은 위원장에게 임시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경찰, 검찰, 법관, 군인의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 ④ 「국가경찰위원회 규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 해설** → ① (X)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 임명을 제청할 때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 ② (O) 국가경찰위원회 규정 제7조 제3항
- ③ (X)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 있거나 그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동법 제8조 제5항 제3호).
- ④ (X) 이 영(국가경찰위원회 규정)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국가경찰위원회 규정 제11조).

정답 ②

5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핵심정리 49p]

- ① 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있으며, 수임 및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 ③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 ④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이관하여야 한다.

- 해설** → ① (O)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호
- ② (X)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있으며, 수임 및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임 및 수탁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동규정 제8조).
- ③ (O) 동규정 제6조
- ④ (O) 동규정 제3조 제2항

정답 ②

6 직위해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핵심정리 61~62p]

- ① 직위해제는 휴직과 달리 제재적 성격을 가지는 보직의 해제이다.
- ②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여 직위해제를 한 경우 대기명령 기간 중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용권자가 직권면직시킬 수 있다.
- ③ 직위해제 기간은 원칙적으로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 요구로 직위해제된 사람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등은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포함된다.
- ④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5호(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제70조의2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적격심사를 요구받은 자)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이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

해설

- ① (O) 옳은 설명이다.
- ② (O)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2항

국가공무원법

제70조(직권 면직)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5. 제73조의3 제3항에 따라 대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② 임용권자는 제1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미리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1항 제5호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73조의3(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③ 임용권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자에게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

- ③ (O)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5조 제2항 제2호 가목
- ④ (X)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5호(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제70조의2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적격심사를 요구받은 자)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은 봉급의 7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40퍼센트를 지급한다(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 제2호).

정답 ④

7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핵심정리 79p]

- ①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은 누구나 공직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이하 “임용권자등”)에게 신고할 수 있다.
- ② 임용권자등은 ①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공직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 확인을 위해 조사할 수 있으며,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임용권자등은 ②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등이 요청한 경우로서 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피해자등이나 성희롱 또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가해 행위를 했다고 신고된 사람에 대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휴가 사용 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임용권자등은 ②에 따른 조사 결과 공직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反)하지 않는 한, 피해자에게 「공무원임용령」 제41조에 따른 교육훈련 등 파견근무 조치를 할 수 있다.

해설

- ① (O)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3조
 ② (X) 임용권자등은 ①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공직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동규정 제4조 제1항).
 ③ (O) 동규정 제4조 제2항
 ④ (O) 동규정 제5조 제1항

[핵심정리]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3조(성희롱·성폭력 발생 사실의 신고)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누구나 공직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이하 “임용권자등”이라 한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제4조(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 ① 임용권자등은 제3조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공직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임용권자등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등이 요청한 경우로서 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피해자등이나 성희롱 또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가해 행위를 했다고 신고된 사람에 대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휴가 사용 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보호)

- ① 임용권자등은 제4조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공직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임용권자등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反)하여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무원임용령」 제41조에 따른 교육훈련 등 파견근무
 2. 「공무원임용령」 제45조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위예의 전보
 3. 근무 장소의 변경, 휴가 사용 권고 및 그 밖에 임용권자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적절한 조치

정답 ②

8 경찰공무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핵심정리 65~70p]

- ① 「공직자윤리법」상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외국으로부터 선물(대가 없이 제공되는 물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하되, 현금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받거나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외국단체 포함)에게 선물을 받으면 지체없이 소속 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그 선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 ② ①에 따라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상 신고하여야 할 선물은 그 선물 수령 당시 증정한 국가 또는 외국인인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국화폐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로 10만원 이상인 선물로 한다.
- ③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으면 취업할 수 있다.
- ④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요양급여·재활급여·간병급여·부조급여는 5년간, 그 밖의 급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해설

- ① (O) 공직자윤리법 제15조 제1항
- ② (O)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 ③ (O)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 ④ (X)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요양급여·재활급여·간병급여·부조급여는 3년간, 그 밖의 급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4조 제1항).

정답 ④

9 경찰상 의무이행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핵심정리 88~89p]

- ① 경찰상 강제집행은 경찰하명에 따른 경찰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상대방의 신체 또는 재산이나 주거 등에 실력을 행사하여 경찰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으로 간접적 의무이행확보 수단이다.
- ② 강제징수란 국민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해 부담하고 있는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행정청이 강제적으로 의무가 이행된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으로 새로운 의무 이행확보 수단이다.
- ③ 집행벌은 의무이행을 위한 강제집행이라는 점에서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인 경찰벌과 구별되며, 경찰벌과 병과해서 행할 수 있고, 의무이행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부과하는 것도 가능하다.
- ④ 해산명령 불이행에 따른 해산조치, 불법영업소의 폐쇄조치, 감염병 환자의 즉각적인 강제격리는 모두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해설

- ① (X) 경찰상 강제집행은 경찰하명에 따른 경찰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상대방의 신체 또는 재산이나 주거 등에 실력을 행사하여 경찰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으로 직접적 또는 간접적(집행벌, 이행강제금) 의무이행확보 수단이다.
- ② (X) 강제징수란 국민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해 부담하고 있는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행정청이 강제적으로 의무가 이행된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으로 전통적 의무이행확보 수단이다
- ③ (O) 옳은 설명이다.
- ④ (X) 해산명령 불이행에 따른 해산조치, 불법영업소의 폐쇄조치는 직접강제이고, 감염병 환자의 즉각적인 강제격리는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정답 ③

10 다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에 대한 내용에서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를 모두 더한 값은? [핵심정리 90~91p]

- ㉠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 동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 ㉢ ()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 행정청은 당사자가 동법 제24조의3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년의 범위에서 과태료의 분할납부나 납부기일의 연기를 결정할 수 있다.
- ㉤ 행정청은 ㉣에 따라 과태료의 분할납부나 납부기일의 연기(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를 결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그 징수유예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① 26

② 28

③ 33

④ 34

해설 → $5 + 5 + 14 + 1 + 9 = 34$

- ㉠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 제1항).
- ㉡ 동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동법 제19조 제1항).
- ㉢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동법 제9조).
- ㉣ 행정청은 당사자가 동법 제24조의3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과태료의 분할납부나 납부기일의 연기를 결정할 수 있다(동법 제24조의3 제1항).
- ㉤ 행정청은 ㉣에 따라 과태료의 분할납부나 납부기일의 연기(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를 결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그 징수유예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정답 ④

11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보호조치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핵심정리 96~97p]

- ① 경찰관은 자살기도자를 발견하여 경찰관서에 보호할 경우 지체 없이 구호대상자의 가족, 친지 또는 그 밖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구호대상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인계할 수 있다.
- ② 경찰관은 보호조치 등을 하는 경우에 구호대상자가 휴대하고 있는 무기·흉기 등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領置)하여 놓을 수 있고, 그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긴급구호요청을 받은 응급의료종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긴급구호요청을 거절할 경우,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보호조치는 경찰관서에서 일시 보호하여 구호의 방법을 강구하는 것으로 경찰관의 재량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없다.

- 해설** → ① (X) 경찰관은 제1항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호대상자의 가족, 친지 또는 그 밖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구호대상자를 적당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4항).
- ② (O)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7항
- ③ (X) 긴급구호요청을 받은 응급의료종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긴급구호요청을 거절할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X) 보호조치는 원칙적으로 경찰관의 재량행위이나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는 경우’ 기속행위의 성격을 가지게 되며, 경찰관이 이를 소홀히 할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판례]

긴급구호권한과 같은 경찰관의 조치권한은 일반적으로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는 것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상황하에서 경찰관에게 그러한 조치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그 불행사가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불행사는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게 되어 국가배상법상의 다른 요건이 충족되는 한, 국가는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45927).

정답 ②

12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핵심정리 100~102p]

- ① 경찰관은 불법집회·시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의 위해와 재산·공공시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찰봉 또는 호신용경봉을 사용할 수 없다.
- ② 경찰관은 범인·술에 취한 사람 또는 정신착란자의 자살 또는 자해기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갑·포승 또는 호송용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
- ③ 경찰청장은 위해성 경찰장비를 새로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신규 도입 장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후 3개월 이내에 안전성 검사 결과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경찰관은 가스차·살수차 또는 특수진압차의 최루탄발사대로 최루탄을 발사하는 경우에는 15도 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하여야 하고, 최루탄발사기로 최루탄을 발사하는 경우 30도 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하여야 한다.

- 해설** → ① (X) 경찰관은 불법집회·시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의 위해와 재산·공공시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경찰봉 또는 호신용경봉을 사용할 수 있다(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 ② (O) 동규정 제5조
- ③ (O) 동규정 제18조의2 제4항
- ④ (O) 동규정 제12조 제2항

정답 ①

13 한정된 인력이나 예산을 가지고 갈등이 생기는 경우에 업무추진의 우선순위를 지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조직편성원리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핵심정리 111~113p]

- ① 조정과 통합의 원리 ② 명령통일의 원리
③ 계층제의 원리 ④ 통솔범위의 원리

해설 ➡ ① 설문은 ‘조정과 통합의 원리’ 내용 중 ‘갈등의 조정과 통합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정답 ①

1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핵심정리 142~146p]

- ① 민원인이 경찰관서에서 현재 수사 중인 ‘폭력단체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한 경우,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차원에서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② 공공기관은 비공개 대상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 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해설 ➡ ① (X)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 ② (O) 동법 제9조 제2항
③ (O) 동법 제11조 제1항·제2항
④ (O) 동법 제11조 제3항, 제21조 제1항

정답 ①

15 「경찰 감찰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핵심정리 151~152p]

- ① 감찰관은 소속 경찰기관의 관할구역 안에서 활동하여야 하나, 상급 경찰기관의 장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밖에서도 활동할 수 있다.
- ② 감찰관은 소속공무원의 의무위반행위에 관한 단서(현장인지, 진정·탄원 등을 포함한다)를 수집·접수한 경우 소속 경찰기관의 감찰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경찰기관의 장은 감찰관이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밝혀졌을 경우와 제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전보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승진 등 인사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경찰기관의 장은 1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감찰관에 대해서는 희망부서를 고려하여 전보한다.

해설 ➡ ① (O) 경찰 감찰 규칙 제12조

② (O) 동규칙 제15조 제1항

③ (X) 경찰기관의 장은 감찰관이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밝혀졌을 경우와 제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이내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전보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승진 등 인사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동규칙 제7조 제1항).

④ (O) 동규칙 제7조 제2항

정답 ③

16 「경찰 인권보호규칙」(경찰청 훈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핵심정리 158~161p]

- ① 인권보호담당관은 반기 1회 이상 인권영향평가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경찰청 인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경찰청장은 경찰관등이 근무하는 동안 지속적·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매년 인권교육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조사담당자는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경찰·검찰 등의 수사가 시작된 경우에는 사건 조사를 즉시 중단하고 종결하거나 해당 기관에 이첩할 수 있다. 다만, 확인된 인권침해 사실에 대한 구제 절차는 계속하여 이행할 수 있다.
- ④ 조사담당자는 제출자가 보관 중인 물건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하며, 사건이 종결되어 더 이상 보관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제출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반환할 수 있다.

해설 ➡ ① (O) 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24조

② (X) 경찰청장은 경찰관등이 근무하는 동안 지속적·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3년 단위로 인권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동규칙 제18조 제1항).

③ (O) 동규칙 제34조

④ (O) 동규칙 제32조 제4항

정답 ②

1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핵심정리 172~173p]

- ① 경찰서장이 소속경찰서 경무계 직원들에게 격려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회식비는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② A경위가 휴일날 인근 대형마트 행사에서 추첨권에 당첨되어 수령한 수입차는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③ 공직자등이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로부터 제공받는 금품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④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

해설 ▶

- ① (O)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제1호
- ② (O) 동법 제8조 제3항 제7호
- ③ (O) 동법 제8조 제3항 제4호
- ④ (X)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동법 제8조 제1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0조의 외방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고·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정답 ④

18 경찰과 윤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핵심정리 181~183p]

- ① 1945년 국립경찰의 탄생 시 경찰의 이념적 좌표가 된 경찰정신은 대륙법계의 영향을 받은 ‘봉사와 질서’이다.
- ② 경찰현장에서는 “우리는 화합과 단결 속에 항상 규율을 지키며 검소하게 생활하는 근면한 경찰이다”라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 ③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경찰윤리강령의 문제점 중 ‘냉소주의의 문제’란, 경찰관의 도덕적 자각에 따른 자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요구된 타율성으로 인해 진정한 봉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해설** → ① (X) 1945년 국립경찰의 탄생 시 경찰의 이념적 좌표가 된 경찰정신은 미군정의 영미법계의 영향을 받은 ‘봉사와 질서’이다
- ② (X) 경찰현장에서는 “우리는 화합과 단결 속에 항상 규율을 지키며 검소하게 생활하는 깨끗한 경찰이다”라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 ③ (O)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의2(직위의 사적이용 금지)
- ④ (X) ‘냉소주의의 문제’란 경찰윤리강령은 민주적 참여에 의한 제정보다는 위에서 제정되고 일방적으로 하달되어 냉소주의를 불러일으키는 단점이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경찰관의 도덕적 자각에 따른 자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요구된 타율성으로 인해 진정한 봉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비진정성의 조장이다.

[핵심정리] 윤리강령의 문제점

실행가능성의 문제	경찰윤리강령은 법적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위반했을 경우 제재할 방법이 미흡함. 지나친 이상추구의 성격 때문에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 있음
냉소주의의 문제	경찰윤리강령은 민주적 참여에 의한 제정보다는 위에서 제정되고 일방적으로 하달되어 냉소주의를 불러일으키는 단점이 있음
최소주의의 위험	경찰윤리강령은 강령에 제시된 바람직한 행위 그 이상의 자기희생을 하지 않으려는 최소주의의 위험문제를 야기함
비진정성의 조장	경찰윤리강령은 경찰관의 도덕적 자각에 따른 자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요구된 것으로서 타율성으로 인해 진정한 봉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윤리적 불감증 야기 가능)
우선순위 미결정	경찰윤리강령이 구체적인 경우 상세하지만 그보다 더 곤란한 현실문제에 있어서 무엇을 먼저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할지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못 됨
행위중심적 성격	경찰윤리강령이 무슨무슨 행위중심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행위 이전의 의도나 동기를 소홀히 함

정답 ③

19 사회적 수준의 범죄원인론 중 ‘사회과정원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핵심정리 196~198p]

- ① Sutherland의 차별적 접촉이론에 따르면, 범죄는 범죄적 전통을 가진 사회에서 많이 발생하며, 이러한 사회에서 개인은 범죄에 접촉·동조하면서 학습한다.
- ② Cohen은 하류계층의 청소년들이 목표달성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들만의 하위문화를 만들고, 범죄는 이러한 하위문화에 의해 저질러진다고 주장하였다.
- ③ Matza & Sykes에 따르면, 청소년은 비행 과정에서 ‘책임의 회피’, ‘피해자의 부정’, ‘피해 발생의 부인’, ‘비난자에 대한 비난’, ‘충성심에의 호소’ 등 5가지 중화기술을 통해 규범, 가치관 등을 중화시킨다.
- ④ Hirshi에 따르면, 범죄는 사회적인 유대가 약화되어 통제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고, 사회적 결속은 애착, 참여, 전념, 신념의 4가지 요소에 영향을 받는다.

해설 ▶ ② (X) 사회구조원인론 중 Cohen의 하위문화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①③④는 사회과정원인에 대한 설명으로 모두 옳은 지문이다.

[핵심정리] 사회과정원인 범죄이론

사회 학습 이론	Sutherland(차별적 접촉이론) - 범죄는 범죄적 전통을 가진 사회에서 많이 발생하며 이러한 사회에서 개인은 범죄에 접촉, 참가, 동조하면서 학습됨	쇼와 맥케이의 ‘사회해체’ 개념에 대비해 서덜랜드는 이를 ‘사회적 분화’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며 개인의 학습을 ‘사회적 학습’이라고 규정함
	Glaser(차별적 동일시이론) - 청소년들이 영화의 주인공을 모방하고 자신과 동일시하면서 범죄를 학습함	
	Burgess & Akers(차별적 강화이론) - 청소년의 비행행위는 처벌이 없거나 칭찬받게 되면 반복적으로 저질러짐	
	Matza & Sykes(중화기술이론) - 청소년은 비행의 과정에서 합법적, 전통적 관습, 규범, 가치관 등을 중화시킴	중화기술에는 책임의 회피(부정), 피해자의 부정, 피해발생 부인(가해의 부정), 비난자에 대한 비난, 충성심에의 호소 등 5가지로 설명함
사회 통제 이론	Reckless(건제이론) - 좋은 자아관념은 주변의 범죄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비행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됨	1) 범죄유발의 외적압력 - 가난, 비행하위문화, 퇴폐환경, 차별적 기회구조 등 2) 범죄유발의 내적압력 - 좌절, 욕구, 분노, 열등감 등
	Briar & Piliavin(동조성전념이론) - 사람들은 행위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단기유혹에 노출되며 노출이 끝나면 다시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고 범죄를 했을 때 자신에게 돌아오는 처벌의 두려움, 자신의 이미지, 사회에서의 지위와 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염려하는 동조성에 대한 전념을 가지고 있음	동조성에 대한 전념은 부모와 선생님 등 다른 사람과의 대인관계를 통해 얻어지게 됨
	Hirshi(사회유대이론) - 범죄의 원인은 사회적인 유대가 약화되어 통제되지 않기 때문임	사회적 결속 요소 : 애착, 참여, 전념, 신념 등
낙인 이론	범죄자로 만드는 것은 행위의 질적인 면이 아닌 사람들의 인식임	Tannenbaum - 악의 극화라고 표현함 Lemert - 일차적 일탈과 이차적 일탈로 구분하여 설명함

정답 ②

20 ‘112신고 접수·지령 매뉴얼’과 관련된 위치정보조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핵심정리 207~208p]

- ① 납치·감금·강도, 성폭력 등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범죄피해를 당하거나 범죄피해가 예상되는 자의 위치정보조회가 가능하다.
- ② 자살을 암시하는 유서 또는 음성, 문자 등을 타인에게 전송한 자살기도자의 위치정보조회가 가능하다.
- ③ 112 또는 119를 통해 긴급구조 요청이 접수된 경우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의거하여 위치정보조회를 실시한다.
- ④ 위치정보조회는 112신고 접수시스템에 연계하여 위치정보 요청 및 정보를 수신한다.

해설 → ③ (X) 112 또는 119를 통해 긴급구조 요청이 접수된 경우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거하여 위치정보조회를 실시한다.
①②④ 모두 옳은 설명이다.

[핵심정리] 112신고 접수시 위치정보 조회 가능여부(112신고 접수·지령 매뉴얼)

상황별 구분	내 용	가능여부
범죄 피해자 (요구조자)	납치·감금, 강도, 성폭력 등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범죄 피해를 입거나 예상되는 경우	가능
치매환자, 지적장애인, 실종아동(18세미만)	보호자의 보호 없이는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자로써 현재 보호 상태를 이탈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이 예상	가능
자살기도	자살을 암시하는 유서가 발견되거나, 음성·문자 등을 타인에게 전송한 경우	가능
조 난	자연재해로 인하거나 산중·해상 등 자연적 환경에 적절한 보호수단이 없이 방치되어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이 예상	가능
단순가출 행방불명 ·연락두절	보호자의 보호 상태를 이탈하기는 하였으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추정할 특별한 징후를 발견치 못한 경우	추가단서확보시까지 위치정보 조회 곤란

[핵심정리] 112신고 접수 지령 관련 위치정보조회(112신고 접수·지령 매뉴얼)

구 분	통신수사	위치정보조회
관련근거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 공요청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요 건	검사, 사법경찰관이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112·119를 통해 긴급구조 요청 접수된 경우
조회대상	대상자가 통신한 기지국 주소	대상자가 현재 위치한 기지국 주소, 또는 GPS 등 위치정보
절 차	지방법원·지원 허가, 긴급한 경우(사후허가 가능)	112신고 접수시스템 연계 위치정보 요청 및 정보 수신
소요시간	약 30분 내외(FAX 전송 등)	수초 이내

정답 ③

2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핵심정리 239~241p]

- ① 동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응급조치상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등으로부터 격리할 경우 48시간을 넘을 수 없으나, 검사가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한 경우에는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시까지 연장된다.
- ②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범죄의 재발이 우려되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사법경찰관의 직권으로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 ③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 ④ 임시조치 결정을 통해 아동학대행위자를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등을 할 수 있다.

- 해설** → ① (X) 응급조치상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등으로부터 격리할 경우 72시간을 넘을 수 없으나, 검사가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한 경우에는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시까지 연장된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3항).
- ② (O) 동법 제13조 제1항
 - ③ (O) 동법 제19조 제1항
 - ④ (O) 동법 제19조 제1항 제7호

정답 ①**2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핵심정리 236~238p]

- ① 아동·청소년이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도 그러한 아동·청소년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는 동법에서 말하는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포함된다.
- 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 알선의 대상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면서 알선행위를 하였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이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 ③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가 성매매알선을 위한 종업원을 고용하면서 고용 대상자에 대하여 연령확인 의무 이행을 다하지 아니한 채 아동·청소년을 고용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에 관한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
- ④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행위(동법 제13조 제2항)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 해설** → ① (O) 대법원 2011.11.10. 2011도3934
- ② (X)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의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알선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 아동·청소년을 알선의 대상으로 삼아 그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하지만, 이에 더하여 알선행위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이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6. 2. 18. 2015도15664).
- ③ (O) 대법원 2014. 7. 10. 2014도5173
- ④ 옳은 설명이다.

[핵심정리] 위반행위 및 처벌

위반행위	미수 처벌(O, X)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제11조 제1항)	O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제11조 제2항)	X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자(제12조)	O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제13조 제1항)	X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제13조 제2항)	X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제14조 제1항)	O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제15조 제1항)	X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자(제16조)	X

정답 ②

23 수사실행의 5대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핵심정리 243p]

- ① 수사자료 감식·검토의 원칙: 수사관의 상식적 검토·판단에만 의할 것이 아니라 감식과학이나 과학적 지식 또는 시설장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수사를 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수사의 기본방법 중 제1조건이다.
- ② 적절한 추리의 원칙: 추측 시에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추측은 수사결과에 대한 확정적 판단이므로, 신뢰성이 검증된 증거를 바탕으로 추측을 하여야 한다.
- ③ 검증적 수사의 원칙: 여러 가지 추측 중에서 어떤 추측이 정당한 것인가를 가리기 위해서는 그들 추측 하나를 모든 각도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수사방법의 결정 → 수사사항의 결정 → 수사실행이라는 순서에 따라 검토한다.
- ④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 수사관이 한 판단의 진실성이 증명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나 그 진위가 확인될 수 있어야 하며, 판단이 언어나 문자로 표현되고 근거의 제시로서 객관화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해설

- ① (X) 수사의 기본방법 중 제1조건의 원칙은 수사자료 완전수집의 원칙이다.
- ② (X) 적절한 추리의 원칙은 추측 시에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추측은 수사결과에 대한 가상적인 판단(가설)이므로, 신뢰성이 검증된 증거를 바탕으로 추측을 하여야 한다.
- ③ (X) 검증적 수사의 원칙은 여러 가지 추측 중에서 과연 어떤 추측이 정당한 것인가를 가리기 위하여 그들 추측 하나 하나를 모든 각도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수사사항의 결정 → 수사방법의 결정 → 수사실행 순서로 검토하여야 한다.
- ④ (O) 옳은 설명이다.

[핵심정리] 수사실행의 5대 원칙

수사자료 완전수집의 원칙	수사기관은 사건해결의 관건이 되는 자료를 누락하거나 멸실시키는 일이 없도록 전력을 다하여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는 원칙(수사실행의 5원칙 중 제1법칙)
수사자료 감식 · 검토의 원칙	수사는 단순한 수사관의 상식적 검토나 판단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감식과학이나 과학적 지식 또는 그 시설장비를 유용하게 최대한 이용해야 한다는 원칙
적절한 추리의 원칙	추측시에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추측은 가설적인 판단(가설) 이므로 그 진실성이 확인될 때까지는 추측을 진실이라고 주장 · 확인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검증적 수사의 원칙	① 여러 가지 추측 중에서 과연 어떤 추측이 정당한 것인가를 가리기 위하여 그들 추측 하나 하나를 모든 각도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원칙 ② 수사사항의 결정 → 수사방법의 결정 → 수사실행 순서로 검토해야 함 ③ 추측을 확인하는 작업인 동시에 또 다른 측면에서 새로운 자료수집이라고 할 수 있음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	① 수사에 의해 획득한 확신 있는 판단은 모두에게 그 판단이 진실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 ② 수사기관은 자신의 판단이 진실이라는 이유 또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해야 함

정답 ④

24 압수 · 수색의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핵심정리 254~257p]

- ① 수색한 경우 증거물 · 물수물이 없으면 수색증명서를 교부하고,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② 압수 · 수색영장 집행 전에 피처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더라도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 · 수색을 진행하면 위법하다.
- ③ 피의자를 신문하던 중 제출된 압수물에 대하여, 피의자신문조서에 압수의 취지를 기재함으로써 압수조서에 갈음할 수는 없다.
- ④ 압수 · 수색영장은 사법경찰리 명의로 검사에게 신청하고, 영장신청서에는 피의자의 인적 사항, 죄명, 범죄사실의 요지, 압수 · 수색 · 검증의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해설

- ① (O) 형사소송법 제128조, 제129조
- ② (X)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 · 수색을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1.22. 2104도 10978).
- ③ (X) 피의자를 신문하던 중 제출된 압수물에 대하여, 피의자신문조서에 압수의 취지를 기재함으로써 압수조서에 갈음할 수 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50조).
- ④ (X) 압수 · 수색영장은 사법경찰관 명의로 검사에게 신청하고, 영장신청서에는 피의자의 인적 사항, 죄명, 범죄사실의 요지, 압수 · 수색 · 검증의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7조, 형사소송규칙 제107조 제1항)

정답 ①

25 통신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핵심정리 271~276p]

- ① 「형법」 제283조 제2항의 ‘존속협박’으로는 통신제한조치허가서를 청구할 수 없다.
- ② 통신자료에는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일 또는 해지일, 전화번호, ID 등이 포함된다.
- ③ 통신사실확인자료 중 수사를 위한 정보통신기기 관련 실시간 추적자료, 컴퓨터 통신·인터넷 로그기록 자료는 다른 방법으로 범행 저지, 범인의 발견·확보, 증거의 수집·보전이 어려운 경우에만 해당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 요청이 가능하다.
- ④ 통신제한조치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봉 등의 방법으로 우편물의 내용을 지득·채록·유치하는 것을 의미하는 우편물의 검열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등을 사용하여 전기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전기통신의 감청이 있다.

해설 ➔

- ① (O)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 ② (O)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 ③ (X) 통신사실확인자료 중 수사를 위한 정보통신기기 관련 실시간 추적자료, 특정한 기지국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다른 방법으로 범행 저지, 범인의 발견·확보, 증거의 수집·보전이 어려운 경우에만 해당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 요청이 가능하다(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2항).
- ④ (O) 동법 제2조

[핵심정리] 통신제한조치

개 념	우편물의 검열(당사자의 동의없이 개봉 등의 방법으로 우편물의 내용을 지득·채록·유치하는 것)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당사자의 동의없이 전자장치등을 사용하여 전기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
대 상 범 죄	- 총 280개 범죄 - 대상범죄 아닌 경우 : 상해치사, 폭행치사, 존속협박, 사기, 특수공무방해, 장물취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행·상해), 자동차불법사용, 관세법위반, 직무유기, 주거침입 등 - 대상범죄인 경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사기, 공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협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관세법위반 등 ※ 살인죄로는 통신제한조치허가서를 청구할 수 있으나, 상해치사죄로는 위 대상범죄가 아니어서 허가서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수사기관은 변사자건 처리 시 이 점에 유념하여 허가서 청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미성년자 간음죄(형법 제305조)는 대상범죄이나,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형법 제302조)는 대상범죄가 아님

정답 ③

26 다음은 리드(REID) 테크닉을 활용한 신문기법의 순서이다. A부터 D까지 각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핵심정리 280~281p]

직접적 대면 → 신문화제의 전개 → (A) → 반대논리 격파 → (B) → (C) → 양자택일적 질문하기 → (D) → 구두자백의 서면화

- ① A단계는 용의자가 수사관의 신문화제 전개를 방해하는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을 하지 못하게 억지한다.
- ② B단계는 전(前)단계가 효과적이라면 피의자가 수사관을 회피하기 쉬우므로 시선을 맞추고 화제를 계속 반복하는 동시에 피의자의 긍정적 측면을 부각한다.
- ③ C단계는 동정과 이해를 표시하고, 끝까지 피의자를 추궁하여 자백할 것을 촉구한다.
- ④ D단계는 용의자가 수사관의 질문에 선택적으로 답하는 단계를 지나 적극적으로 범행에 대하여 진술하도록 한다.

- 해설** → REID 테크닉을 활용한 신문기법은 직접적 대면 → 신문화제의 전개 → (A 부인 다루기) → 반대논리 격파 → (B 관심 이끌어내기) → (C 우울한 기분 달래주기) → 양자택일적 질문하기 → (D 세부사항 질문) → 구두자백의 서면화의 9단계이다.
- ①②④ 모두 옳은 설명이다.
 - ③ (X) C는 '우울한 기분 달래주기' 단계로 사실대로 말할 것을 촉구하며 동정과 이해를 표시한다. 끝까지 피의자를 추궁하여 자백할 것을 촉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핵심정리] REID 테크닉을 활용한 신문기법

1단계	① 직접적 대면(direct and positive confrontation) ② 수사관이 용의자가 범인이라는 심증을 갖고 있음을 명확하게 알려준다.
2단계	① 신문 화제의 전개(theme development) ② 용의자에게 범행에 대한 합리화·정당화 사유를 제공하여 비난가능성을 줄여주는 화제를 언급한다. 예 감정적 용의자에 대하여 용의자의 죄책감을 줄여주는 발언, 비감정적 용의자에 대하여 진실을 그대로 말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발언
3단계	① 부인(否認) 다루기(handling denials) ② 용의자가 수사관의 신문화제 전개를 방해하는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을 하지 못하게 억지한다.
4단계	① 반대논리 격파(overcoming objections) ② 수사관이 주도하는 신문의 화제를 흐리는 용의자의 진술을 압도한다.
5단계	① 관심 이끌어내기(procurement and retention of the suspect's attention) ② 4단계가 효과적이라면 피의자가 수사관을 회피하기 쉬우므로 시선을 맞추고 화제를 계속 회복하는 동시에 피의자의 긍정적 측면을 부각한다.
6단계	① 우울한 기분 달래주기(handling the suspect's passive mood) ② 사실대로 말할 것을 촉구하며 동정과 이해를 표시한다.
7단계	① 양자택일적 질문하기(presenting an alternative question) ② 어느 것을 선택해도 혐의가 인정되는 2가지 선택의 질문을 던진다.

8단계	① 세부사항 질문(having the suspect relate details of the offense) ② 용의자가 수사관의 질문에 선택적으로 답하는 단계를 지나 적극적으로 범행에 대하여 진술하도록 한다.
9단계	① 구두 자백의 서면화(converting an oral confession into a written confession) ② 피의자가 진술로 자백한 내용을 서면으로 확보한다.

정답 ③

27 시체의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핵심정리 298~299p]

- ① 적혈구 자체 중량에 의한 혈액 침전현상으로 시체 하부의 피부가 암적갈색으로 변화하는 시체얼룩과 세포 가운데의 자가효소에 의해 세포구성성분이 분해·변성되는 자가용해는 모두 시체의 초기현상에 해당된다.
- ② 시체얼룩의 경우, 일산화탄소 중독사는 선홍색을 띠고, 청산가리 중독사는 암갈색을 띤다.
- ③ 공기의 유통이 좋고 온도는 20~30도 사이에서 습도는 60~66%일 때 활발히 진행되는 부패와 피부에 대한 수분 보충이 정지되어 몸의 표면이 습윤성을 잃고 건조해지는 시체의 밀랍화는 모두 시체의 후기현상에 해당된다.
- ④ 총기에 의해 사망한 시체의 경우, 총알입구, 사출구, 사창관이 모두 있는 관통총창이 대부분이나, 발사각도 등에 따라 회선총창, 반도총창이 있을 수 있다.

- 해설** ▶ ① (X) 자가용해는 시체 후기현상에 해당한다.
② (X) 청산가리 중독사의 시체얼룩은 선홍색을 띤다.

사망 당시 시체 상황	시체얼룩
목매 등 특이사항이 없는 시체	암적갈색
익사나 저체온사, 일산화탄소 중독, 청산가리(사이안화칼륨) 중독	선홍색
염소산칼륨 중독, 아질산소다 중독	암갈색(황갈색)
황화수소가스 중독	녹갈색

- ③ (X) 피부에 대한 수분 보충이 정지되어 몸의 표면이 습윤성을 잃고 건조해지는 현상은 시체건조로 시체의 초기현상이다. 시체의 밀랍화는 화학적 분해에 의해 고체 형태의 지방산 혹은 그 화합물로 변화한 상태, 비정형적 부패 형태로 수중 또는 수분이 많은 지중(地中)에서 형성되는 현상을 말한다.
- ④ (O) 옳은 설명이다.

관통총창	총알입구, 사출구, 사창관이 모두 있는 경우 ※ 총기에 의한 손상사체에 있어서 총알입구, 사출구, 사창관이 모두 있는 관통총창이 대부분이나 발사각도 등에 따라 맹관총창, 찔과총창, 반도총창, 회선총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함
맹관총창	총알입구와 사창관만 있고 탄환이 체내에 남아 있는 경우
찔과총창	탄두가 체표만 찔과한 경우
반도총창	탄환의 속도가 떨어져 피부를 뚫지 못하고 피부까집이나 피부밀출혈만 형성한 경우
회선총창	탄환이 골격에 맞았으나 천공시키지 못하고 뼈와 연부조직 사이를 우회한 경우

정답 ④

28 경비경찰의 종류 및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핵심정리 315~316p]

- ① 경비경찰의 종류 중 치안경비란 공안을 해하는 다중범죄 등 집단적인 범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적절한 조치로 사태를 예방·경계·진압하는 경찰을 내용으로 한다.
- ② 경비경찰의 종류 중 혼잡경비란 기념행사·경기대회·경축제례 등에 수반하는 조직화되지 않은 군중에 의하여 발생하는 자연적·인위적 혼란상태를 예방·경계·진압하는 경찰을 내용으로 한다.
- ③ 경비경찰은 다중범죄, 테러, 경호상 위해나 경찰작전상황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출동하여 신속하게 조기진압해야 하는 복합기능적인 활동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 ④ 경비경찰은 지휘관의 하향적 명령에 의한 활동으로 부대원의 재량은 상대적으로 적고, 활동 결과에 대한 책임은 지휘관이 지는 경우가 많다는 특징을 갖는다.

해설 → ①②④ 옳은 설명이다.

- ③ (X) 경비사태에 대하여 기한을 정하여 진압할 수 없으며 즉시 출동하여 신속하게 조기제압을 해야 하는 것은 즉시적(즉응적)활동이다. 복합기능적 활동은 경비사태가 발생한 후에 진압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경계·예방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복합기능적 활동이다.

정답 ③

29 경비수단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핵심정리 320~321p]

- ① 경비부대를 전면에 배치 또는 진출시켜 위력을 과시하거나 경고하여 범죄실행의 의사를 자발적으로 포기하도록 하는 ‘경고’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 ② 경비수단의 원칙 중 ‘위치의 원칙’은 상대방의 저항력이 가장 허약한 시점을 포착하여 집중적이고 강력한 실행행사를 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 ③ 직접적 실행행사인 ‘제지’와 ‘체포’는 경비사태를 예방·진압하거나 상대방의 신체를 구속하는 강제처분으로서 모두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 ④ 경비수단의 원칙 중 ‘균형의 원칙’은 작전시의 변수의 발생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경찰병력이나 군중들을 사고 없이 안전하게 진압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 해설** → ① (O) 경고는 경비부대를 전면에 배치 또는 진출시켜 위력을 과시하거나 경고하여 범죄실행의 의사를 자발적으로 포기하도록 하는 간접적 실행행사로 필요한 경우에 관계자에게 주의를 주고 일정한 행위를 촉구하는 사실상의 통지행위이며 임의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위험발생의 방지)에 근거한다.
- ② (X) ‘적시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위치의 원칙’은 실행행사를 할 때 상대하는 군중보다 유리한 지점과 위치를 확보하여 작전수행이나 진압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 ③ (X) 경고와 제지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 근거를 두고 있고, 체포는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 ④ (X) ‘안전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균형의 원칙’은 균형 있는 경력운영으로 상황에 따라 주력부대와 예비대를 적절하게 활용, 한정된 경력으로 최대의 성과를 거양하는 것이다.

정답 ①

30 「경찰 비상업무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핵심정리 336p]

- ① “지휘선상 위치 근무”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유사시 1시간 이내에 현장지휘 및 현장근무가 가능한 장소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정착근무”란 사무실 또는 상황과 관련된 현장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
- ③ “일반요원”이란 필수요원을 포함한 경찰관 등으로 비상소집시 2시간 이내에 응소하여야 할 자를 말한다.
- ④ “가용경력”이란 총원에서 휴가·출장·교육·파견 등을 제외하고 실제 동원될 수 있는 모든 인원을 말한다.

해설 ➡ ① (O) 경찰 비상업무 규칙 제2조 제2호

② (O) 동규칙 제2조 제4호

③ (X) “일반요원”이라 함은 필수요원을 제외한 경찰관 등으로 비상소집시 2시간 이내에 응소하여야 할 자를 말한다(동규칙 제2조 제6호).

④ (O) 동규칙 제2조 제7호

정답 ③

31 다음 행사장 경호에 대한 설명과 명칭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핵심정리 345p]

- ㉠ 주경비지역으로, 바리케이트 등 장애물을 설치, 돌발사태를 대비한 예비대 운영 및 구급차, 소방차 대기가 필요하다.
- ㉡ 절대안전 확보구역으로, 출입자 통제관리, MD 설치 운용, 비표 확인 및 출입자 감시가 필요하다.
- ㉢ 조기경보지역으로, 감시조 운용, 도보 등 원거리 기동순찰조 운영, 원거리 불심자 검문·차단이 필요하다.

- ① ㉠ 안전구역 ㉡ 경비구역 ㉢ 경계구역
- ② ㉠ 경비구역 ㉡ 경계구역 ㉢ 안전구역
- ③ ㉠ 경비구역 ㉡ 안전구역 ㉢ 경계구역
- ④ ㉠ 경계구역 ㉡ 안전구역 ㉢ 경비구역

해설 ➡ ③ (O) 옳게 연결되었다.

㉠ 제2선 경비구역에 대한 설명이다.

㉡ 제1선 안전구역에 대한 설명이다.

㉢ 제3선 경계구역에 대한 설명이다.

정답 ③

32 「도로교통법」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상 교통안전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핵심정리 368~369p]

- ① 교통안전교육은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학과시험 응시 전 받아야 하는 1시간의 교통안전교육으로,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에서 학과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제외된다.
- ② 특별교통안전교육 중 의무교육 대상은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초보운전자로서 그 정지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등이다.
- ③ 특별교통안전교육 중 권장교육 대상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교육을 받으려는 날에 65세 이상인 사람 등으로, 권장교육을 받기 전 1년 이내에 해당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한정한다.
- ④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중 신규 교통안전교육은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이다.

해설 ➡

- ① (O) 도로교통법 제73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 ② (O) 동법 제73조 제2항 제4호
- ③ (O) 동법 제73조 제3항 제4호
- ④ (X)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중 신규 교통안전교육은 최초로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이다. 정기 교통안전교육은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동법 시행령 제38조의2 제2항).

정답 ④

33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핵심정리 373~377p]

- ①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음주측정을 할 수 있다.
- ② 무면허인데다가 술이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면 무면허운전죄와 음주운전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 ③ 음주감지기에서 음주반응이 나온 경우, 그것만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④ 주차장, 학교 경내 등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 약물운전,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해설 ➡

- ① (O)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 ② (X) 무면허인데다가 술이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는 것은 1개의 운전행위라 할 것이므로 두 죄(무면허운전죄와 음주운전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대법원 1987.2. 2486도2731).
- ③ (O) 대법원 2003.1.24. 2002도6632
- ④ (O) 주차장, 학교 경내 등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음주운전(제44조), 약물운전(제45조), 사고 후 미조치(제54조 제1항 제1호), 손괴 후 인적사상 미제공(제54조 제1항 제2호) 및 해당 처벌조항(제148조, 제148조의2, 제156조 제10호)에 대해 「도로교통법」 적용하여 처벌이 가능하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참고). 단, 형사처벌만 가능하며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불가하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운전”이란 도로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제54조 제1항(사고발생 시의 조치), 제148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벌칙), 제148조의2(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 규정 벌칙) 및 제156조 제10호(벌칙)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정답 ②

34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핵심정리 374~376p]

- ①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서 경찰관이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고지(최초 측정요구시부터 15분 경과)했음에도 계속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때에는 음주측정 거부자로 처리한다.
- ② 음주측정거부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흉골 골절 등으로 인한 통증으로 깊은 호흡을 할 수 없어 이십여차례 음주측정기를 불었으나 끝내 음주측정이 되지 아니한 경우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④ 여러차례에 걸쳐 호흡측정기의 빨대를 입에 물고 형식적으로 숨을 부는 시늉만 하였을 뿐 숨을 제대로 불지 아니하여 호흡측정기에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한 행위는 음주측정불응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 ① (O) 교통단속처리지침 제31조 제5항 제3호
- ② (O)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 ③ (O) 대법원 2006.1.13. 2005도7125
- ④ (X) 여러 차례에 걸쳐 호흡측정기의 빨대를 입에 물고 형식적으로 숨을 부는 시늉만 하였을 뿐 숨을 제대로 불지 아니하여 호흡측정기에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한 피고인의 행위는 음주측정불응의 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4.21. 99도5210).

정답 ④

3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핵심정리 412~414p]

- 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가 규정한 ‘시위’에 해당하려면 ‘공중이 자유로이通行할 수 있는 장소’라는 요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한다.
- ② 외형상 기자회견이라는 형식을 띠었지만, 용산철거를 둘러싸고 철거민의 입장을 옹호하면서 검찰에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는 내용의 공동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인 것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집회에 해당한다.

- ③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옥외집회와 시위를 구분하여 개념을 규정하고 있고, 순수한 1인 시위는 동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집회가 성립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원수에 대해 종래의 학계와 실무에서는 2인설과 3인설이 대립하고 있었으나 대법원은 '2인이 모인 집회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규제대상'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 해설** ▶ ① (X)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通行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威力) 또는 기세(氣勢)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制壓)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따라서 집시법상의 시위는 반드시 '일반인이 자유로이通行할 수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거나 '행진' 등 장소 이동을 동반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헌법재판소 2014. 3.27. 2010헌가2).
- ② (O)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도6301
- ③ (O) 옳은 설명이다. 현행 집시법상 1인 시위는 집회·시위라고 할 수 없다(통설). 따라서 집시법상 집회·시위가 금지된 장소에서도 1인 시위는 가능하게 된다.
- ④ (O) 대법원 2012. 5.24. 2010도11381

정답 ①

3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제한·금지·보완통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핵심정리 417~419p]

- ①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으며, 제한 통고의 경우 시한에 대한 규정은 없다.
- ② 관할경찰관서장은 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집회 및 시위의 경우에 신고서를 접수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금지통고를 할 수 있다.
- ③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른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로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 ④ 보완통고는 보완할 사항을 분명히 밝혀 서면 또는 문자 메시지(SMS)로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 해설** ▶ ① (O)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
- ② (O) 동법 제8조 제1항
- ③ (O) 동법 제7조 제1항
- ④ (X) 보완 통고는 보완할 사항을 분명히 밝혀 서면으로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동법 제7조 제2항).

정답 ④

3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핵심정리 463~465p]

- ①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 ② 위장탈출 혐의자,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 체류국에 5년 이상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람은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구호물품”이란 이 법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거나 빌려주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 ④ 북한이탈주민으로 보호를 받으려는 사람은 재외공관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호를 직접 신청해야 하고, 국가정보원장은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여부를 결정한다.

해설 →

- ① (O)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② (X) 위장탈출 혐의자,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 체류국에 10년 이상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람은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동법 제9조 제1항).
- ③ (X) 보호금품이란 이 법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거나 빌려주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4호).
- ④ (X) 북한이탈주민으로 보호를 받으려는 사람은 재외공관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호를 직접 신청해야 하고(동법 제7조 제1항),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여부를 결정한다(동법 제8조 제1항).

정답 ①**38 다음 비밀공작의 순환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핵심정리 442~443p]

지령 → 계획 → 모집 → 훈련 → 브리핑 → 파견 및 귀환 → 디브리핑 → 보고서 작성 → 해고

- ① ‘모집’은 임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배양시키고, 지식과 기술을 습득케 하는 과정이다.
- ② ‘브리핑’은 공작에 영향을 주는 새로운 상황과 임무에 대한 상세한 지시를 하는 단계로, 공작원에게 공작수행에 대한 최종적인 설명이 이루어진다.
- ③ ‘파견 및 귀환’은 공작계획에 따라 공작을 진행할 사람을 채용하는 과정이다.
- ④ ‘보고서 작성’은 지령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조직화하는 과정이다.

해설 →

- ① (X) 모집은 공작계획에 따라 공작을 진행할 사람을 채용하는 것을 말하며, 훈련은 임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배양시키고, 지식과 기술을 습득케 하는 것이다.
- ② (O) 옳은 설명이다.
- ③ (X) 파견 및 귀환은 공작원을 공작대상 지역에 파견하고, 공작임무를 수행한 후 귀환을 말하며, 공작계획에 따라 공작을 진행할 사람을 채용하는 과정은 모집이다.
- ④ (X) 보고서 작성은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는 것이며, 지령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조직화하는 과정은 계획이다.

정답 ②

39 범죄인 인도에 관한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핵심정리 499~500p]

- ① 자국민불인도의 원칙은 자국민은 인도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서, 우리나라 「범죄인 인도법」 제9조는 절대적 거절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 ② 쌍방가별성의 원칙은 인도청구가 있는 범죄가 청구국과 피청구국 쌍방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범죄에 관하여 범죄인을 인도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 ③ 최소한 중요성의 원칙은 어느 정도 중요성을 띤 범죄인만 인도한다는 원칙이다.
- ④ 특정성의 원칙은 인도된 범죄인이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의 범죄로 처벌받지 아니하고, 제3국에 인도되지 아니한다는 청구국의 보증이 없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원칙이다.

해설 ▶ ① (X)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범죄인 인도법 제9조 제1호).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에 해당한다.

②③ (O) 동법 제6조

④ (O) 동법 제10조

정답 ①

40 여행경보단계 중 해외체류자는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여야 하고, 해외여행 예정자는 불필요한 여행을 자제해야 하는 단계는? [핵심정리 483p]

- ① 남색경보 ② 황색경보
③ 적색경보 ④ 흑색경보

해설 ② (O) 여행정보제도 운영지침 제5조 제1항 제2호

[핵심정리] 여행경보단계별 행동지침

▶ 여행경보제도

	여행경보단계	해외체류자	해외여행 예정자
1단계	남색경보(여행유의)	신변안전 위험 요인 숙지 · 대비	
2단계	황색경보(여행자제)	신변안전 특별유의	불필요한 여행 자제
3단계	적색경보(철수권고)	긴급용무가 아닌한 철수	여행취소 · 연기
4단계	흑색경보(여행금지)	즉시 대피 · 철수	여행금지 준수

▶ 특별여행주의보

- ②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에 따른 행동요령은 학생정보(여행자제) 이상 적색정보(철수권고) 이하에 준한다.

정답 ②